

고정자산세

고정자산세는, 매년 1월 1일에, 고정 자산(토지, 가옥, 소각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그 고정 자산의 가격을 기초로 산정 되는 세액을 그 고정 자산의 소재 하는 시읍면에 넣는 세금입니다.

1납세의무자

고정자산세를 바치는 분

토지	등기부 또는 토지보충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고 있는 분
가옥	등기부 또는 가옥보충 과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고 있는 분
소각 자산	소각 자산과세 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되고 있는 분

2고정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

고정자산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

토지	택지·논·밭·산림·잡종 땅 등
가옥	주택·사무소·점포·공장·창고 등
소각 자산	사업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구축물, 차량, 기계, 기구, 비품 등

3세액의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수×세율(1.4퍼센트)

4과세 표준액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 표준액수는, 원칙으로서 고정 자산을 평가해 결정된 가격으로부터 요구됩니다.
토지 및 가옥의 가격은, 3 해마다 평가바꿈이 행하여져, 나라가 정하는 고정 자산 평가 기준에 근거해서 결정됩니다. 또 이 평가바꿈의 해의 가격은, 원칙으로서 3년간 그대로 두게 됩니다. 또한, 2018년도에 평가바꿈이 행하여집니다.

도시계획세

도시계획세는, 공원, 도로, 하수도등,을 건설·정비하는 도시계획사업의 기반정비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년 1월 1일 에, 시가화구역내에 토지, 가옥을 소유하고 있는 분에 과세되는 목적세입니다.
세액은, 과세 표준액수에 세율 0.3퍼센트를 곱해서 산출하고, 고정자산세로 맞춰서 바치는 것입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자산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가운데, 시가화구역내에 소재 하는 토지 및 가옥

세액의 계산 방법

과세 표준액수×세율(0.3퍼센트)

문의

고정자산세과 토지 제1담당자·제2담당자, 가옥 제1담당자·제2담당자
소재지:우편번호332-8601가와구치시 아오키 2-1-1 (본청사3층)
전화:048-259-7638·7639·7247(토지 제1담당자·제2담당자직통)
048-259-7246·7640·7641(가옥 제1담당자·제2담당자직통)
전화 접수시간:8시30분~17시15분(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일, 연말 연
시를 제외한다)
팩스:048-259-4541

메일로의 문의는 이쪽